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06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권영진·서천호·조경태

박충권 · 김상훈 · 이만희

엄태영 • 우재준 • 조지연

인요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공원으로, 2016년 현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령 상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도시공원 면적 요건이 300만제곱미터로 높게 규정되어 있어지정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없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과 도시공원 안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 등이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와 국가도시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도시공원과 다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요건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도시공원으로 명시하며,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부지 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실질적으로 지정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보전"을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 관광자원화, 국민건강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제49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도시공원을"을 "도시공원 중 부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9조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부지면적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9조의2(국가도시공원위원회) ①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해있는 공원 및 녹지의 개발 및 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①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u>보전</u> 등	<u>보전, 국</u>
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	토의 균형발전, 국가 관광자원
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화, 국민건강증진 및 문화향유
<u>국무회의 심의</u> 를 거쳐 제19조	<u>기회확대</u>
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u>도시</u>	
<u>공원을</u>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	<u>제49</u> 조의2에 따른
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다.	
	도시공원 중 부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
	<u>원을</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2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	
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	
는 비용의 <u>일부</u> 를 예산의 범위	<u>전부 또는 일부</u>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 -----.
- ③ 제19조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공원 시설 부지면적 기준에 대하여 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다.
-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49조의2(국가도시공원위원회)
 - ①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 공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 정에 관한 사항
 - 3.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

 공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해있는

공원 및 녹지의 개발 및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사항

- 6.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